

교통사고를

당하신



시마네현 경찰

머 리 말

이 팸플릿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에게

- 경찰의 지원제도란 어떤 것인지
- 경찰이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 사고 가해자는 어떤 수속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 자동차보험 제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담 없이 상의해 주십시오

담당자는

○○ 경찰서 교통과 ○○계

이 름

전 화

입니다.

~ 목 차 ~

- 1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지원과 연락의 제도 ~
- 2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받게 됩니까?
~ 수사 시작으로부터 처분 결정까지의 흐름 ~
- 3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보상과 보험의 제도 ~
- 4 원조 및 구제 제도는 있습니까?
~ 원조 및 구제의 내용 ~
- 5 경찰 이외의 상담 창구는 있습니까?
~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조언과 카운슬링 기관 ~

경찰로부터의 지원 등은 있습니까?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 분들(이 팸플릿에서는 이하 '피해자 등'으로 기재)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직원의 동반, 정보 제공,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피해자 지원요원 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신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원과는 별도로 지정된 경찰 직원이 피해자 등에 대한 동반, 각종 상담의 수리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 제도

피해자 등은 교통사고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는 잡혔는지, 가해자의 형사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한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담당한 수사원 등이 피해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에 관한 정보

- 가해자의 주소, 이름·연령 등
- 교통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 수사 상황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및 수사현황에 관한 정보

- 가해자의 검거 상황
- 가해자의 처분 상황
- 송치된 검찰청,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 결과, 기소된 재판소

기타

피해자 등 중에는 교통사고를 상기하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담당 수사원 등에게 그 뜻을 알려 주십시오.

韓國語

행정 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公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행정 처분(취소 처분과 90 일 이상의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개적인 '의견 청취'가 처분을 받을 가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의견 청취'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처분이 행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행정 처분의 결과 및 '의견 청취'에 대해 문의하시면 다음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내용

가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 처분의 내용(면허 취소·효력의 정지 여부, 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 청취의 기일 등

'의견 청취'를 실시할 기일과 장소를 알려 드립니다.

경찰이 상담창구

경찰에서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피해자 등의 상담에 응하는 등 지원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십시오.

① 경찰상담전용전화(각종 경찰 상담 접수)

○ . . . 전화 #9110 또는 0852-31-9110

※ 상담 전회의 면치우 간 도도부현 경찰의 것을 사용한다.

②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창구

○ . . . 시마네현 경찰본부 교통부 교통지도과 (전화 0852-26-0110)

○ . . .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부서명		전화번호
시마네현 경찰본부		0852-26-0110
고속도로 순찰대	마쓰에	0862-62-3110
	하마다	0855-22-1377
마쓰에 경찰서		0852-28-0110

韓国語

야스기 경찰서	0854-22-0110
운난 경찰서	0854-45-0110
이즈모 경찰서	0853-24-0110
오다 경찰서	0854-82-0110
가와모토 경찰서	0855-72-0110
고쓰 경찰서	0855-52-0110
하마다 경찰서	0855-22-0110
마스다 경찰서	0856-22-0110
쓰와노 경찰서	0856-72-0110
오키노 시마 경찰서	08512-2-0110
우라고 경찰서	08514-6-0121

- . . . 각 도도부현 경찰의 상담창구를 알고 싶은 분은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실 홈페이지
<http://www.npa.go.jp/higaisya/home.htm>
를 참조하십시오.

③ 카운슬링에 관한 상담창구

교통사고 등에 의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카운슬링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직원의 배치, 정신과 의사 및 민간 카운슬러와의 연계 등으로 피해자 등을 위한 상담·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 시마네현 경찰본부 홍보 현민과 (전화 0852-26-0110 내선 2515~2517)

韓國語

경찰 이외 기관에 의한 지원 및 연락 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경찰 이외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원 제도

피해자 등의 부담 및 불안을 가능한 한 완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등의 지원에 종사하는 '피해자 지원원'이 전국의 검찰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담에 대한 대응, 법정에 대한 안내·동반, 사건 기록의 열람, 증거물의 반환 등 각종 수속을 도와주며, 그밖에 피해자 등의 상황에 따라 정신면, 생활면, 경제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을 소개하는 지원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성 각 기관의 피해자 등 통지 제도 등

검찰청,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희망에 따라 사건의 처분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및 유죄 재판 확정 후의 가해자 처우 상황 등에 대하여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통지의 신청 장소는 사건을 취급한 검찰청입니다.

또, 소년원,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희망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관련된 통지(소년심판 후의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지의 신청 장소는 가해자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가까운 소년감별소,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거주지 도도부현에 있는 보호관찰소입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수사

수사란, 증거를 모음으로써 범인을 특정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사를 합니다.

사정 청취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이나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자세하게 묻습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등 입장에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것,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정 청취는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과 가해자의 특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을 알면 알수록 조기의 사건 해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韓國語

실황검사

실황검사란, 경찰관이

- 교통사고의 현장
-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이나 사고차량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여 교통사고의 상황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등도 실황검사에 입회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발생 당시에 피해자 분이 입고 있었던 옷 등은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증거물로서 제출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송치

경찰은 수사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범인으로 인정했을 경우(이 경우의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사건송치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병을 구속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 검찰관은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는 송치되었을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재판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류를 청구합니다.
- 계속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류하는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했을 경우는, 조사 등의 수사를 한 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기소

검찰관은 송치된 증거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를 '기소'
-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를 '불기소'

라고 말합니다.

또, 기소에는

- 공개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

○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약식청구'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 기소, 불기소의 판단시 필요할 경우 검찰관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들을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불기소가 되었을 경우는 지방재판소와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있는 검찰심사회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공판 등

공판에서는 재판관이 증거에 의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 등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 등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재판소가 인정하는 적당한 사람이 동반할 것.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나 방청인에게서 보이지 않도록 사이에 차폐물을 설치할 것.
- 별실에서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증언할 것.

기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제1회 공판기일 후, 원칙적으로 재판소에 있는 형사사건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에 관한 심정 및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의 제안이 있으면, 공판을 우선하여 방청할 수 있게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합의하여 해결했을 경우에, 달리 민사소송을 일으키지 않아

韓國語

도 되도록 그 해결 내용을 형사 재판의 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청에서 모든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참가제도

위험운전 치사상죄, 과실운전 치사상죄 등의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피해자 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기소 절차상의 지위를 얻은 후에 형사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증인 및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 등은, 공판 기일의 참석이나 피고인 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력(현금, 예금 등의 합계액)으로부터 요양비 등의 금액(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하게 될 것으로 인정 받는 치료비 기타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액(200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재판소에 대하여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명령 제도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죄 등의 피해자 등은, 형사사건이 지방재판소에 관여되어 있을 경우에 그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소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있는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언도가 있었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 명령 사건의 심리가 개시되어 원칙적으로 4회 이내의 기일로 간단·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소가 형사기록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자 등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4회 이내의 기일로는 끝나지 않을 경우나 손해배상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등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수속으로 이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검찰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및 재판소에 문의하십시오.

韓國語

또, 소년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등은, 심판 시작의 결정이 난 후, 원칙적으로 재판소에 있는 소년 사건의 사건기록(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해 행해지는 조사에 대한 기록인, 소위 사회기록은 제외함)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 및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피해에 관한 심정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살인, 상해 등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죄,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 죄 등(가해자의 연령이 사건 당시 12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상해 사안에 관해서는 모두 이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생기게 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의 피해자 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재판소로부터 심판 기일의 심판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가정재판소로부터 소년심판의 결과 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재판소에 문의하십시오.

갱생보호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제도

가해자의 갱생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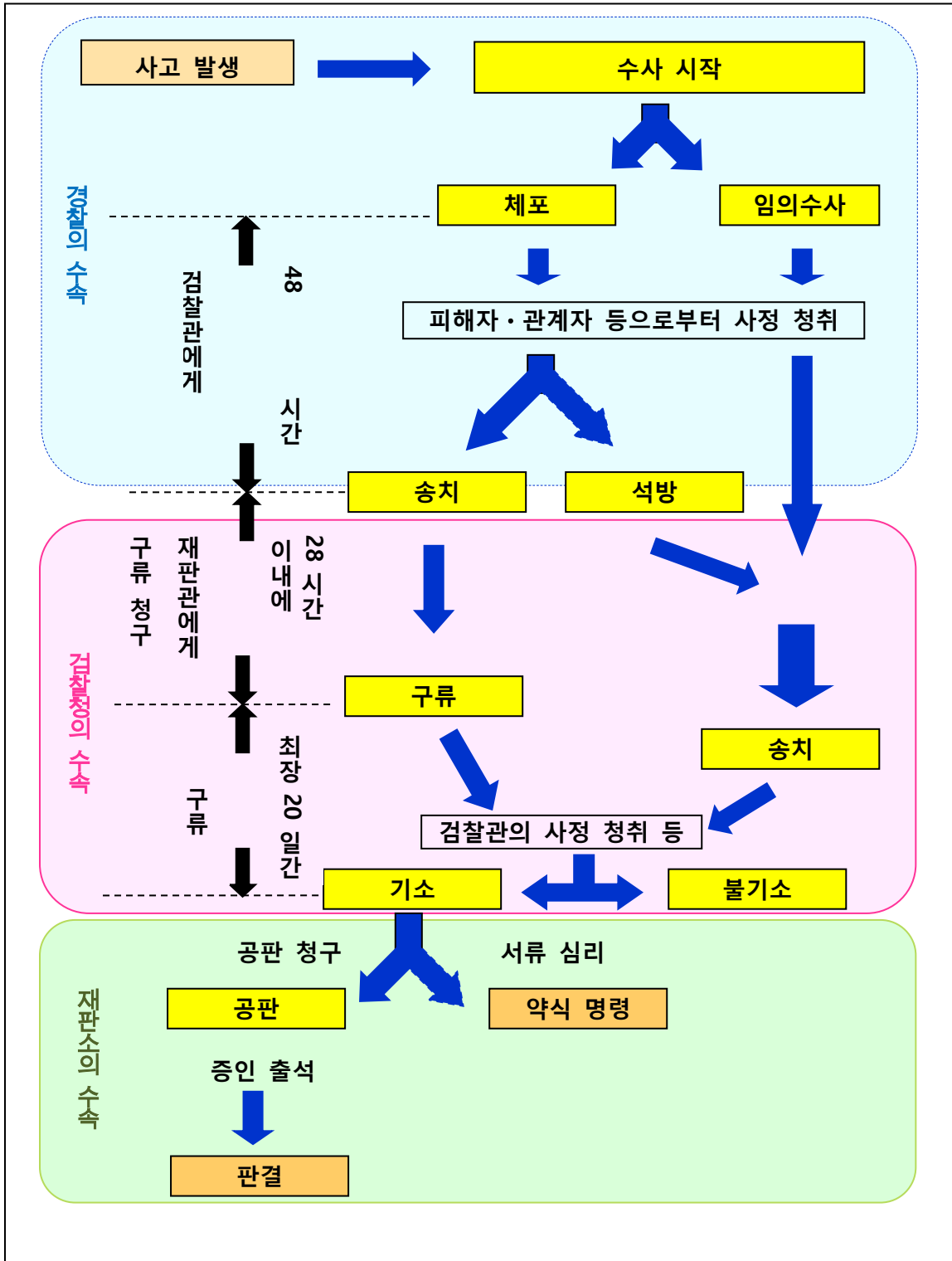
- 가해자가 형사시설 및 소년원에 수용되었을 경우, 신청한 피해자 등은 가해자의 가석방이나 소년원으로부터의 가퇴원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심리에서 가석방·가퇴원에 관한 의견 및 피해에 관한 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청취한 의견 등은,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서 가석방·가퇴원의 판단시에 고려되며 그밖에 가석방·가퇴원을 허락할 경우의 특별준수 사항의 설정 등에서 고려됩니다.
- 심정 등 전달 제도
가해자가 보호관찰로 되었을 경우, 피해자 등 쪽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피해에 관한 심정, 피해를 입은 분에 놓인 상황,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의 생활이나 행동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것을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게 알립니다.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실정 등을 직시시켜, 반성과 회개의 마음을 깊게 갖도록 지도·감독을 합니다.

韓国語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십시오.

韓國語

형사 수속의 흐름도



범인이 소년(20 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심판 수속 등에 의한 경우가 있어 이 수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韓国語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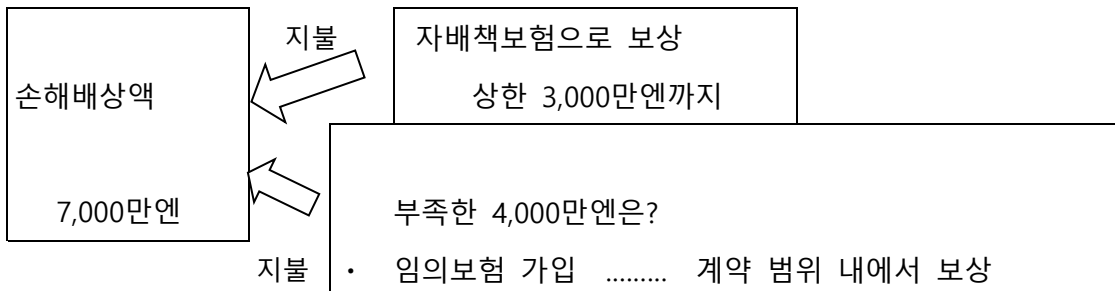
자동차보험에는, 강제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공제를 포함)과 임의보험(공제를 포함)이 있으며,

- 자배책보험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 1 대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보험
- 임의보험은, 자배책보험에서는 모두 보완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가입해야 함(의무)		가입	임의						
인신 손해만		대상	인신 손해와 대물 손해						
<table border="1"> <tr> <td>사망</td> <td>3,000만엔</td> </tr> <tr> <td>상해</td> <td>120만엔</td> </tr> <tr> <td>후유 상해</td> <td>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td> </tr> </table>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	지불 한도액	보험계약의 한도액까지 보상
사망	3,000만엔								
상해	120만엔								
후유 상해	75만~4,000만엔 (1~14의 장애등급에 따름)								

인신손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배책보험으로 보상되며, 손해 배상액이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분은 임의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로 손해배상액이 7,000만엔으로 되었을 경우, 자배책보험으로 상한 3,000만엔이 보상(전보)되어, 부족분 4,000만엔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임의보험이나 피해자가 가입한 인신상해보험 등에 의해 전액 또는 일부가 보상됩니다. 이들에 의해서도 보상액이 손해 배상액을 채울 수 없을 경우나 관계자가 이들 보험에 미가입이었을 경우는 가해자 자신이 배상하게 됩니다.



韓国語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보험 미가입 가해자가 보상 | |
|--|--|--|

자배책보험

1 자배책보험의 청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손해보험 회사(조합을 포함)에 대하여 교통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합니다.

(1) 피해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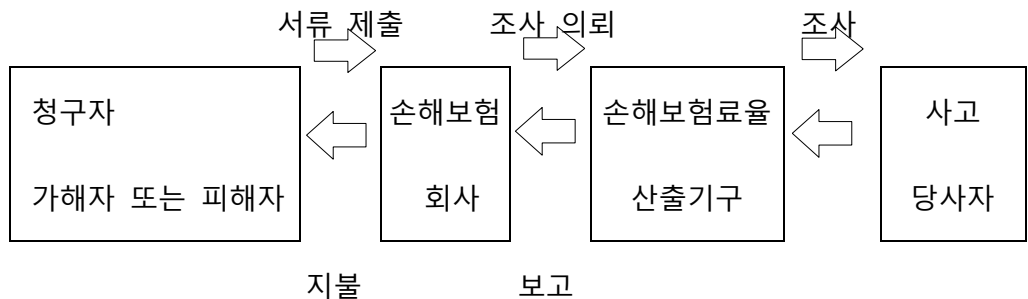
피해자 등이 직접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청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운전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총 손해액의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불했을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했을 때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몇 번이라도 손해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의 흐름



2 가지불 제도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에 의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장의 출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불을 손해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韓国語

※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청구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해	치료를 마친 날	사고 발생부터 2년 이내
후유장해	장해판정일	장해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	사망일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장해판정일이란, 증상이 안정세를 보이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를 해도 그 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의사에 의해 판단됩니다.

韓国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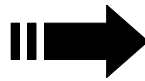
임하는 경우)								
호적등본	◎			◎			◎	
후유장애 진단서		◎			◎			
엑스레이 사진 등	○	○	○	○	○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사고 내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도 필요에 따라 제출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보험(공제)

보험금 청구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분

보험회사

사고 후 신속히 연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다음과 같은 인신사고에 대해서는 자배책보험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뺑소니를 당해 상대가 밝혀지지 않는다.
- 사고를 일으킨 상대가 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란, 이러한 경우 등에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구제를 하기 위해 손해를 전보(填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것은 손해보험 회사 등에 문의하십시오.

韓國語

기타 배상 청구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 정해져 있으며, 피해자 등은 가해자 본인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조나 구제 제도는 인스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원조·구제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및 각종 지원·복지 제도

(1) 관공청이 실시하는 것

명칭	내용
피해자 등의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뺑소니 사고, 교통사망사고, 전치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 위험운전 치사상해 등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카운셀링 지원제도• 사망뺑소니사고, 위험운전치사 등에 의해 사망해, 사법해부된 경우의 사체 반송, 사체복원의 공비 부담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창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경찰 본부
복지 제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모자가정이 되었을 경우에, 아동 부양 수당 및 모자복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또, 수입이 없어지거나 적어져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韓国語

	<p>창구: 주소지의 자치단체, 복지사무소</p>
<p>공영주택으로 의 우선적 입 주</p>	<p>교통사고로 수입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등에 공영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p> <p>창구: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공영주택 관리 담당</p>

※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韓國語

(2) 각종 원조·구제 기관이 실시하는 것

명칭	내용
<p>독립행정법인 자동차 사고 대책기구</p> <p>전화 03-5276-4451</p> <p>※본부가 도쿄에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 지소가 있습니다.</p> <p>시마네 지소</p> <p>Tel.0852-25-4880</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교통사고 피해자 핫라인</p> <p>0570-000738</p> <p>※9:00~17:00</p> <p>토·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함</p>	<p>중학교 졸업까지의 교통유아나 자동차사고에 의한 중도후유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생활 자금의 대부 등, 아래와 같은 피해자 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① 자동차사고로 상시 또는 수시의 간호가 필요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에 대한 간호료 급부</p> <p>② 자동차사고로 중도후유장애가 남은 분이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단기로 입원·입소하는 비용의 보조</p> <p>③ 자동차사고로 천연성 의식 장애인의 치료 및 간호를 하는 요양시설의 설치·운영</p> <p>④ 교통유아 또는 중도후유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생활 자금의 대부</p> <p>⑤ 요양과 관련된 상담, 교통유아의 생활 상담 등의 접수</p> <p>홈페이지 http://www.nasva.go.jp</p>
<p>(재)교통유아 육성기금</p> <p>전화 03-5212-4511</p> <p>무료전화</p> <p>0120-16-3611</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교통사고로 아버지(어머니)를 여인 16세 미만의 교통유아가,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거출금을 불입하여 '교통유아 육성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이에 중앙정부와 민간협력단체가 부담하는 원조금을 합쳐서 운용하여, 교통유아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육성 급부금으로서 연 4회(3, 6, 9, 12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상담 등은 기금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p>

韓国語

	<p>자동차 사고에 의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분이 사망했거나,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배책 1~3급)가 남아있는 분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고, 더우기 의무교육종료 전의 자제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의 조건하에, 급부로서 「월년자금」 「입학준비금」 「진학 등 지원금」 「긴급시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홈페이지 http://www.kotsuiji.or.jp</p>
<p>도로 후생회 전화 03-6674-1761 ※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의 교통유아로서, 경제적으로 취학이 어려운 고교생에 대하여 수학 자금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홈페이지 http://www.douro-kouseikai.org/</p>
<p>일본사법지원센터 전화 03-6745-5600 법 테라스 시마네 TEL 050-3383-5500 일반법률상담 TEL 0570-078374 (영어대응가능) 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0570-079714</p>	<p>피해자 등의 지원에 자세한 변호사 및 범죄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의 무료제공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재판 대리 비용, 서류작성 비용의 대신지불 등을 실시합니다.</p> <p>또,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구제의 관점에서 변호사 비용 등의 원조를 실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홈페이지 http://www.houterasu.or.jp</p>

※ 자세한 것은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韓國語

2 세법 상의 구제 제도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부상을 입어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으신 분,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에게는 소득세가 감액되는 '소득공제'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칭	내용
의료비 공제	지불한 의료비(그 의료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함)의 금액(일정액을 넘는 부분에 한함)이 공제되는 것.
장애인 공제	장애인에게 27만엔(중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는 40만엔. 이하 동일), 부양친족 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1명에 대해 27만엔이 공제되는 것.
과부(홀아비) 공제	남편과 사별한 아내 또는 아내와 사별한 일정한 남편에게 원칙적으로 27만엔의 공제액이 인정되는 것.

※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십시오.

경찰 이외의 관공청 및 공적 기관, 기타 각종 기관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담창구의 개설

및 카운슬링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 창구

韓国語

명칭	내용
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p>피해상담이나 사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p> <p>◇ 마쓰에 지방검찰청 피해자 상담실</p> <p>전화 : 0852-32-6701</p> <p>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8:30~17:15</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보호관찰소	<p>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전화나 내청에 의한 상담 및 문의에 대응하여, 고민이나 불안 등을 듣고 각종 제도의 설명이나 관련 기관의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p> <p>◇ 마쓰에 보호관찰소</p> <p>전화 : 0852-21-2250</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韓国語

<p>법무성</p> <p>인권옹호기관</p> <p>휴대폰용 홈페이지</p>	<p>인권옹호위원이 피해자 등의 인권상담에 대응하여, 인권침해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침범 사건으로서 조사를 하고, 사안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p> <p>◇ 마쓰에 지방 법무국 상설 인권옹호과</p> <p>전화 : 0852-32-4260</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 전국의 법무국·지방 법무국의 상설 인권상담 창구</p> <p>홈페이지 http://www.moj.go.jp/JINKEN/jinken20.html</p> <p>◇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SOS-e 메일)</p> <p>· PC http://www.moj.go.jp/JINKEN/jinken113.html</p> <p>· 휴대전화 http://www.jinken.go.jp/soudan/mobile/001.html</p>
<p>현 및 시의</p> <p>교통사고 상담소</p>	<p>◇ 시마네현의 상담 창구</p> <p>시마네현 교통사고 상담소(본부)</p> <p>전화 : 0852-22-5102</p> <p>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9:00~12:00</p> <p>13:00~16:00</p> <p>시마네현 교통사고 상담소(하마다 상담실)</p> <p>전화번호 : 0855-21-5563</p> <p>접수번호 : 매주 수요일 9:00~12:00, 13:00~16:00</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韓国語

<p>범죄피해자 등 조기 원조단체 등</p>	<p>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범죄피해자 등 조기원조단체나 '전국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에 가맹하고 있는 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면서 범죄피해 등에 관한 전화·메일·면접 상담이나 법정, 병원, 경찰 등에 동반하는 등, 피해자 등의 원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공익사단법인 시마네 피해자 서포트 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 0120-556-491</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6:00</p> <p style="text-align: center;">(토일, 공휴일, 12월29일~1월3일, 8월13일~15일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재)교통사고 분쟁 처리 센터</p>	<p>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화해의 알선이나 법률상담을 촉탁 변호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창구: 본부는 도쿄에, 지부는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다카마쓰 및 후쿠오카의 각시에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홈페이지 http://www.jcstad.or.jp/</p> <p style="text-align: center;">◇ (재)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 히로시마 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082-249-5421</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9:00~17:00</p> <p style="text-align: center;">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13:00~16:00</p>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韓国語

<p>(재)일본 변호사 연합회 교통사고 상담센터</p>	<p>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금 지불에 대한 트러블에 관한 법률상담, 손해배상의 협상에 관한 합의 알선, 뇌손상에 따른 고차뇌기능장애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습니다.</p> <p>창구: 본부는 도쿄에, 상담소는 전국 152개소에 개설</p> <p>홈페이지 http://www. n-tacc. or. Jp</p> <p>◇(재)일본변호사연합회 교통사고 상담센터 시마네현 지부(마쓰에)</p> <p>전화번호 : 0852-21-3450</p> <p>접수번호 : 매월 제 1 화요일 10:00~12:00,13:00~16:00</p> <p>(재) 일본변호사연합회 교통사고 상담센터 시마네현 지부 (이와미)</p> <p>전화번호 : 0855-22-4515</p> <p>접수번호 : 매월 금요일 10:00~12:00, 13:00~16:00</p> <p>※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p>
<p>손해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상담소</p>	<p>각 손해보험 회사의 본점·지점·영업소 내에 있습니다.</p> <p>창구:</p>
<p>(재) 시마네 국제센터</p>	<p>시마네에서 생활하는 외국분들이 외국어에 의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창구에서는, 중국어· 타갈로그어· 영어 상담원을 배치해, 전화 · 내방 등의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p> <p>◇ 재단법인 시마네 국제센터(마쓰에)</p> <p>전화번호 : 0852-31-5056</p>

韓国語

	<p>접수시간 : 일본어 (평일) 8:30~18:30</p> <p>영어 (수요일) , 중국어 (목요일) , 타갈로그어 (금요일)</p> <p>13:00~17:00</p> <p>재단법인 시마네 국제센터 서부 지소(하마다)</p> <p>전화번호 : 0855-28-7990</p> <p>접수시간 : 일본어 (평일) 8:30~18:30</p>
--	---

※ 자세한 것은 관계 기관 등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상담

피해자 등 중에는 교통사고로 강한 쇼크를 받아 불안해서 참을 수 없게 되거나, 기분을 잘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는 증상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나 면접에 의한 기타 상담을 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심적 고민 상담

◇ 시마네현립 심신 상담센터

전화번호 : 0852-21-2885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8:30~17:15

◇ 시마네 생명의 전화

전화번호 : 0852-26-7575

상담시간 : 9:00~22:00 (무휴) ※토요일은 9:00~다음날 일요일 22:00

※일본어로 연락해 주세요.

※상기의 시설은 공휴일·연말연시 등에는 쉽니다.